

「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」 국회 통과

- 철강산업 저탄소·고부가 전환 및 사업재편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-

「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」(이하 ‘철강특별법’) 제정안이 11월 27일(목)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.

글로벌 공급과잉과 탄소 감축 요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강산업을 저탄소·고부가 구조로 전환하고 미래 경쟁력을 갖추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만들어진 것이다.

「철강특별법」의 주요 내용으로 저탄소·고부가 전환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▲국무총리 소속 ‘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’ 설치, ▲저탄소 철강 기준·인증체계 마련, ▲저탄소철강 기술개발·실증·협력모델 지원, ▲저탄소철강특구 지정·지원, ▲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육성, ▲전력·수소·용수 공급망 설치·확충, ▲각종 인·허가 및 환경규제 특례, ▲국제협력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.

또한, 설비합리화 등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들의 실질적 수요를 반영한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특례를 담고 있는데, ▲사업재편 계획 수립 및 이행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정보교환을 허용하고, ▲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산업부장관이 공정위 동의를 거쳐 사업재편승인기업의 공동 행위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 ▲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기업결합 심사기간을 기존 30+ 90일에서 30+ 60일로 단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.

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은 “법안 논의 과정에서 기재부·공정위 등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와 여야의 초당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었다”고 언급하면서 “철강 특별법이 상당한 비용과 시일이 요구되는 저탄소 공정 전환과 미래 유망 고부가 품목으로의 전환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하위법령에 입법 취지를 충실히 구현하여 시행토록 하겠다”고 밝혔다.

「철강특별법」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, 공포 후 6개월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.

담당 부서	산업공급망정책관 철강세라믹과	책임자	과 장	송영상 (044-203-4690)
		담당자	사무관	송석원 (044-203-4694)

◇ 철강산업의 저탄소·고부가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저탄소철강 기준·인증 체계 마련 및 기술개발·실증 지원, 공정거래법 특례 등 제도적 기반 마련

- (거버넌스) 국무총리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
- (기본·실행계획) 5년 단위 기본계획, 1년 단위 실행계획 수립·시행
- (탄소중립) 저탄소철강 기준부터 수요 창출까지 전주기 지원 체계 마련
 - ① (저탄소철강 기준·인증) 저탄소철강 사용 촉진을 위해 일정 기준 충족 시 인증 가능, 인증 제품에 대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
 - ② (저탄소철강기술) 연구개발, 사업화, 설비도입 촉진 지원
 - ③ (저탄소철강 협력체계) 수요-공급기업간 실증시험·성능검증 지원
 - ④ (저탄소철강 수요창출) 저탄소철강 우선구매 시책 마련
 - ⑤ (저탄소철강특구) 철강사업자·지원시설 등이 집적화된 지역을 특구로 지정 가능하며 산업기반시설·신재생설비·편의시설 등 지원
 - ⑥ (재생철자원) 가공전문기업 등 산업육성 근거 마련
- (공정거래법 특례) 정보교환, 공동행위 허용, 기업결합심사기간 단축
 - ① (정보교환) 사업재편 승인기업과 사업재편계획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에 필요 최소한의 정보교환 허용
 - * 사전에 공정위에 알리고 사업재편 신청에 필요한 생산·설비·손익 등 필수적인 정보교환 가능
 - ② (공동행위) 산업부장관이 공정위 동의 거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공동행위 예외적 승인
 - ③ (기업결합) 기업결합심사기간을 기존 30+90일 → 30+60일로 단축
 - * 기업결합신고 60일전까지 임의적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에 한하며, 자료보완기간은 심사기간에 불산입
- (규제특례) ①각종 인·허가 절차(신·증설, 공정개선 등) 간소화, ②불가피한 환경기준 초과에 대한 특례, ③신기술·신공정 검증에 대한 신속조치 등
- (기타 기반조성) 전력·수소·용수 공급망 설치·확충, 국제협력, 인력양성